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 세면제 조례 중 기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3년 4월 14일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2월 16일 남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3년 4월 2일 회부

다. 상정 일자 : 제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년 4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추찬식)

가. 제안 이유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
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 교육 진흥을 도모함.

나. 주요 골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면제를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다. 참고 사항

조례 관련 구세 감면액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부산직할시 남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 조례 제2조 면제 대상에 보면 사회 교육 시설로서 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 공동 시설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고 각 호에 보면,

각종 공공 공익 분야중 사회 교육에 대한 시설에 대하여 구세 과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문화 시설과의 상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도서관 진흥법(91.3.8 법률 제4352호)에 의한 도서관은 그 근본 설치 목적이 사회 교육 이념에 충실할뿐 아니라 공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하고 있음에도 구세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에 구세 과세 면제의 법적 구성 요건인 지방세법 제7조 제8조에 적용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 진흥법의 목적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때 이 조례의 개정안은 적법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위원 | 답변공무원 | 질의 요지 | 답변 요지 |
|------------|---------------|---|---|
| 박수용 위원장 | 세무 1과장 추찬식 | ○ 사회교육시설이나 교통 교육시설, 운수, 그밖에 박물관, 미술관등이 사립 도서관과 같이 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도서관의 종류는 설립지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 등 3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 설립, 등록되는 사립공공 도서관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해주는 것임. 국립또는 공립도서관은 국가에서 다소 예산 지원이 있지만 시립공공 도서관은 예산지원이 없음. |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